

# 지방의원(천안/아산시) 주택보유현황조사 결과 보고서

천안아산경실련 2024-06-26

## I. 조사배경

### □ 조사배경

- 지난 21년 LH 직원들이 신도시 등 개발정보를 이용하여 집단적으로 부동산 투기를 한 의혹이 경실련 등 시민단체의 폭로로 공직자들의 전방위적인 투기 논란으로 확산되어 정치권의 핵심 이슈가 됨.
- 이후 재·보선에서 집권당이 참패하고 나서야 부동산 투기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고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됨.
- 지방자치단체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지방의원은 오히려 정보접근의 용이성에 의해 지역개발정보를 쉽게 취득하고 지역토호세력과의 연합으로 온갖 부패의 온상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음.
- 그동안 경실련은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 축소 신고와 재산증식, 부패근절을 위해 국회, 정부부처, 지방자치단체 등 공직자 재산신고대상에 대한 전반적인 재산공개 실태를 조사 분석해 왔음.
- 이에 경실련은 부동산 투기 근절, 공직의 재산증식 사적 이용 및 이해충돌 방지, 선출직 공직자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재산신고 및 공개 제도가 취지에 부합하도록 운영되고 있는지를 살펴 제도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함.

### □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

- 조사대상 : 천안시의회 의원 26명(2024년도 3월 재산등록대상자)아산시의회 의원 17명.
- 자료수집 : 충청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(2024.3.28.) 재산등록공개자료를 근거로 작성.

□ 조사기준

- **보유주택** : 재산등록 건물중 주택(주거)만 대상으로 하고, 부모나 자녀보유는 독립생계유지를 이유로 고지거부 할 수 있으므로 형평성을 고려하여 본인 및 배우자 만 조사함. 건물에서 상가, 공장, 농장, 창고 등 용도로 추정되는 것은 제외.
- **주택유형** : 주택은 아파트, 오피스텔, 단독주택, 연립주택, 복합건물(주택+상가), 근린생활시설, 다가구주택 만 조사함. 오피스텔은 사무용도 혹은 주거용도를 구분하여 신고하지 않아 주택에 포함.

## II. 조사결과

□ **시의원 48%는 다주택(2주택 이상) 보유**

- 천안시의회 의원의 15%(4명)는 무주택자(전세, 월세)이며, 46%(12명)는 다주택자(2채 이상)였으며, 아산시의회 의원의 12%(2명)는 무주택자이며, 59%(10명)는 주택을 2채 이상 보유.

<표1> 천안시.아산시의회 의원 주택보유현황(본인 배우자 기준)

구분	의원수	무주택		유주택					
				합계		1주택		다주택	
		명	비중	명	비중	명	비중	명	비중
천안시의회	26	4	15%	22	85%	10	38%	12	46%
아산시의회	17	2	12%	15	88%	5	29%	10	59%
계	46	6	13%	37	80%	15	33%	22	48%

- **(정당별 주택보유현황 천안시의원)** 정당별로 보면, 국민의힘 소속의원의 7%가 무주택자이고, 더불어민주당 소속의원의 27%가 무주택자로 조사됨. 국민의힘 소속의원의 50%는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, 더불어민주당 소속의원은 45%로 드러남.
- **(정당별 주택보유현황 아산시의원)** 더불어민주당 소속의원의 22%가 무주택자이고, 국민의힘 소속의원은 없음. 2채 이상 보유한 더불어민주당 소속의원은 44%이고, 국민의 힘 소속의원은 75%로 나타남.

〈표2〉 천안시의회 의원 정당별 주택 보유 현황

구분	의원수	무주택		유주택					
				합계		1주택		다주택	
		명	비중	명	비중	명	비중	명	비중
국민의힘	14	1	7%	13	93%	6	43%	7	50%
더불어민주당	11	3	27%	8	73%	3	27%	5	45%
무소속	1			1	100%			1	100%
계	26	4	15%	22	85%	9	35%	13	50%

〈표3〉 아산시의회 의원 정당별 주택 보유 현황

구분	의원수	무주택		유주택					
				합계		1주택		다주택	
		명	비중	명	비중	명	비중	명	비중
더불어민주당	9	2	22%	7	78%	3	33%	4	44%
국민의힘	8	0	0%	8	100%	2	25%	6	75%
계	17	2	12%	15	88%	5	29%	10	59%

□ **보유 주택 유형은 아파트(56%), 복합시설, 근린생활시설 순.**

- 보유주택 유형에서 천안시의원은 아파트(37채), 복합건물(7채), 단독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의 주요 순이며, 아산시의원은 아파트(13채), 근린생활시설(6채), 단독주택(5채)의 주요 순으로 나타남.
- 보유주택 유형에서 아파트가 56%를 차지함.

〈표4〉 천안시.아산시 시의원 보유 주택유형

구분	계	주택유형(채)						
		아파트	단독주택	복합건물	근린생활시설	다가구주택	오피스텔	연립주택
천안시의회	56	37	4	7	4	2	2	1
아산시의회	33	13	5	3	6	3	3	

□ **보유주택 주소지의 84%는 관내이나 관외도 15% 보유**

- 지방자치법 90조에는 지방의원이 해당 지자체 구역 밖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그 시점부터 피선거권을 잃고 의원직에서 퇴직한다고 규정. 지방의원은 지역민의 대표를 뽑는 것이기에 거주 요건을 요구하며 그 지역에 거주하면서 삶을 영위하고 있는 주민이 지방의원이 될 수 있음.

- 그러나,
  - ① 관외에 주택을 소유하면서 관내에는 친척집에 주소를 두고 동거인의 주택을 등록하지 않은 사례[명○○ 의원]
  - ② 관외에 주택을 소유하면서 관내에 임대로 거주지를 두고 있는 경우[유○○ 의원],
  - ③ 거주 주택을 신고하지 않지 않은 사례[유○○ 의원]
  - ④ 인근 지자체에 배우자 명의 전세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으나 관내에 임대로 주소를 둔 사례[김○○ 의원] 등 지방의원으로서 거주 요건 및 주민등록법 위반 가능성이 있으며, 인근 지자체에서 출·퇴근하는 것이 아닌지 의혹이 있음.
- 천안시의원은 82%(46채)가 관내에 위치하고 있으며, 관외는 18%(10채)로 나타남. 관외 주소지는 아산(5), 광명(1), 공주(1), 평택(1), 홍천(1), 서울(1) 등에 위치하고 소유 및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음.
- 아산시의원은 88%(29채)가 관내에 위치하고 있고, 관외는 12%(4채)인 것으로 드러났으며, 공주(1), 홍성(1), 서울(1), 천안(1) 등에 소재.

〈표5〉 천안시.아산시의회 의원 보유 주택 주소지

구분	관내(채)	관외(채)	비고
천안시의회	46 (82%)	10 (18%)	아산(5) 광명(1) 공주(1) 평택(1) 홍천(1) 서울(1)
아산시의회	29 (88%)	4 (12%)	공주(1) 홍성(1) 서울(1) 천안(1)

- **3주택 이상 보유한 의원! 천안 6명, 아산 2명**
- 천안시의원의 경우 3주택 이상 보유한 의원은 모두 6명으로 전체 56채 중 55%(31채)이며 이들의 가액 합계는 약 86억원에 이룸. 가장 많은 주택을 보유한 의원은 장혁의원 (국민의힘)으로 16채를 보유하고 있음.
- 아산시의원의 경우 3주택 이상 보유한 의원은 모두 2명으로 전체 33채 중 30%(10채)이며 이들의 가액 합계는 약 23억원 정도임.

〈표6〉 3주택 이상 보유한 의원(본인, 배우자 기준)

구분	성명	소속	주택		소재지		비고
			개수	신규액 (백만원)	관내	관외	
천안시 의회	장혁	국민의힘	16	3,688	12	4	아파트(16)
	이종만	국민의힘	3	603	2	1	단독(1), 다가구(2)
	유수희	국민의힘	3	248.9	2	1	복합(2), 아파트(1)
	류제국	더불어민주당	3	644.3	3		근린(1),아파트(1),오피스(1)
	노종관	국민의힘	3	2,101	3		복합(1), 단독(1), 아파트(1)
	김영환	국민의힘	3	1,329.7	3		복합(2), 아파트(1)
아산시 의회	김은아	국민의힘	6	828.8	5	1	아파트(1), 다가구(1), 근린(1), 오피스(1)
	맹의석	국민의힘	4	1,434	4		복합(1), 단독(1), 근린(1), 아파트(1)

### Ⅲ. 제도개선 방안

#### ➔ 공직자 재산등록신고 및 공개제도 개선

- 건물(부동산) 등록신고시 상세주소를 공개하고 실거래가로 기재하도록 강화해야 함. 다가구주택이나 다세대 주택 등 호실에 따라 임대와 자가이 충분히 구분될 수 있도록 기재하는 방안 등 재산등록의 실효성 제고 노력이 필요함.
- 직계 준비속의 재산은 독립생계를 유지하거나 타인이 부양할 경우는 공개를 거부할 수 있음. 동거가족은 반드시 공개하도록 하는 등 고지거부 요건을 엄격히 심사하도록 강화해야 함.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여 아예 고지거부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필요함.
- 공개된 재산정보가 데이터 형식이 아닌 단순한 전자문서 형태(PDF)로 공개되고 있어 다양한 형태로 분류하거나 분석하여 시민에게 정보를 제공하는데 어려움. 공공데이터법을 적용하여 정보를 기계 판독 및 검색을 할 수 있는 형태(엑셀, CSV)로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함.

#### ➔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과잉주택보유자 해당 상임위 배제

- 토지 및 주택, 도시 계획 관련 상임위 소속 의원의 경우는 재산형성과정(취득 경위, 소득원 등)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해야 함.
- 다주택 소유 의원의 관련 상임위 배정을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함.